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신청서			
사업장명칭		사업장관리번호	
단위사업장 명	3	단위사업장 기호	
신 성 명		사업장 연락처	
청 생년월일	1	휴대전화	
인 인 관 :	의 베		
발급 대상	,	□ 가입자 전원 (상실자 □ 포함, □ 미포함) □ 가입자 일부 (□ 가입자, □ 상실자)	
발 급 기 간 ⁽⁾		□ 현재 기준 (발급일 기준) □ 발급기간: 20 ~ 20	
발 급 목 적	□ 건강보험 업무(사업장 확인용) □ 건강보험 업무 외(타기관 제출용) - 제출처: - 발급사유:		
발급 구분	□ 직접발급 □ EDI전송 □ FAX전송 □ 우편발송		
위와 같이 가입자명부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받은 가입자명부는 발급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, 명부상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적인 책임은 공단이 아닌 신청인에 있음을 확약함.			
		20	
신	청인(사용자/법인명) :	(서명 또는 인)	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			

- 1. 건강보험 업무목적(사업장 확인용)으로 발급받는 경우
- 사용자 본인 신청 시: 신청서(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), 사용자의 신분증
- 사업장가입자 신청 시: 신청서(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),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(사용자)의 신분증사본,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
- 제3자 위임 시: 신청서(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), 사용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(사용자)의 신분증사본, 가입자(발급대상) 개개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, 피위임자 본인 신분증
- ※ 사용자가 개인(자연인)이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 단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분증 대체
- 2. 일부 가입자(상실자)만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, 발급 받고자 하는 가입자(상실자)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「가입자 일부(가입, 상실) 발급 명단」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3. 발급목적이 '건강보험 업무 외(타기관 제출용)'인 경우, 가입자(상실자) 개개인의 위임이 필요합니다.
- 4. 발급구분이 FAX전송 또는 우편발송일 경우, 공단에 신고된 사업장의 FAX번호 · 우편물수령 주소지로 발급됩니다.
- 5. 발급기간은 가입자의 취득일자를 뜻하며, 범위를 정할 경우 기간내에 가입자(상실자)만 발급
- 6. 탈퇴된 사업장의 경우 발급목적이 '건강보험 업무'만 발급가능하며, 법인은 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있는 자만이 가능함(탈퇴 전 대표자가 등기부상 삭제된 경우 발급불가)